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8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위성곤 · 오세희 · 강득구
진성준 · 서미화 · 김기표
김준혁 · 강준현 · 민병덕
양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등은 표시·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조제2항제3호를”을 “제5조제2항제3호·제5호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표시한 광고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u>	5. <u>특정 인종 · 국적 · 종교 · 성별 등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5조제2항제3호를</u>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 · 표시한 자	1의2. <u>제5조제2항제3호 · 제5호를</u> ----- -----
1의3. ~ 5. (생략)	1의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